

CONTENTS

IV.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 1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 21

○ 첨부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 / 2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IV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1 추진 배경

-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 일반 근로빈곤층 보다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
-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 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필요
-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2 추진 체계



3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①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군·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 ②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 I 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I 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 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희망키움통장 I 전환가입자 처리절차 참고)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

구 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여부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희망키움통장 I·II 환수해지 및 일부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O
내일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O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O

※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 장려금 등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가입자 등록 확정처리

2 지원기준

- ㉔ (소득하한) 가입 및 통장유지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 *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672,105의 20%)

4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 ㉔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¹⁾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²⁾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672,105원의 20%)

-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485,000원*
 - *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 (1,104,945원) - 334,421] × 63%
- ㉔ (지원요건)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탈수급 유예기간 3년 만기 후 3개월)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 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2)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㉔ (탈수급 후 참여 가능 소득상한 기준)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2018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3,683,150원의 60%= 2,209,890원)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지원금 적립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① (가입자) 가입 승인 후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계좌 개설

- *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 금융기관의 적금 운영방식에 따라 본인 적금계좌 및 적립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개설 필요, 다만, 본인적금 계좌 저축액은 0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 본인적금계좌 이월은 희망키움통장 I 과 동일하며 압류방지 설정 불가



②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의 신청 청년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③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 * 지역자활센터에 해지관련 서류 제출



④ (가입자) 은행에서 지원금 인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단,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여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수급 재신청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참조)

● 지원내역(예시)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1만원* *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0만원 이상* * 최대 지원 금액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8.5 = 월 58.5만원 ⇒ 3년간 약 2,106만원

※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희망키움통장 I 은
해지 환수처리 후 신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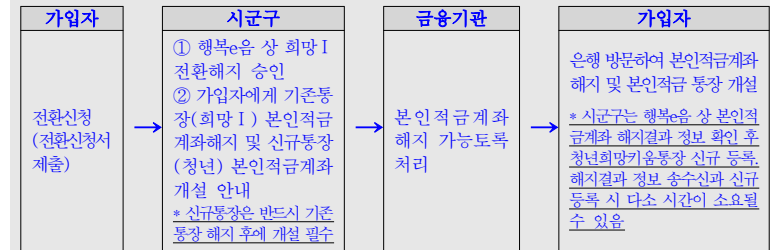
- 단, 아래와 같이 희망키움통장 I 가입 기간 및 적립액 등 연계 참여(전환가입)도 가능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 가입 처리절차

-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해지**로 처리하되,
 - 희망 I 의 본인적립금 및 이자는 동일하게 희망 I 해지 시 지급하고,
 - 희망 I 에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 보류하였다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생계와 의료수급까지 모두 탈수급** 한 경우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지급
 - 단,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총 가입기간(3년) 중 희망 I 에서 가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기산
ex) 희망 I 가입기간이 20개월인데 청년희망으로 전환가입 시 청년희망가입기간은 16개월까지 가능(총 36개월)

- 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 가입자가 생계급여만 탈수급 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동안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만 지급

● 전환 가입 세부(시스템) 처리절차



※ 전환가입 처리 시 중앙자활센터로 사전에 협조 요청하여 진행

2 적립중지

- 실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중지기간 중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만일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근로사업소득 6회 미달 시 환수해지 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 실시

<적립중지 필수사항>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 1월 기준 : 전월 21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0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 중지 안내 필요

5 지급 기준

1 전액 지급

- ㉠ (지급액)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 ㉡ (만기 후 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만기시점 : 본인 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단, 전환가입자는 36회차 장려금 생성 종료일

- 특례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했을 경우는 '연속 3개월 이상' 조건 없이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 (만기 전 해지) 탈수급 후 만기 전 본인요청 있을 경우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지원금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2,209,890원: 2018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3,683,150원의 60%)

<탈수급 후 장려금생성 및 해지를 위한 자격확인 절차>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시 우선 적용
-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 (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상한기준 확인하여 해지 여부 결정

01

IV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2 일부지급

- ㉠ (지급액)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 소득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및 만기 후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환수 처리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 I 재참여 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3 환수

- ㉠ (지급액) 지급요건 미충족 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 적립 기간 중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도 환수해지를 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 없음

【 해지 사유 및 지급액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전액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 적립된 전액지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전환 가입자의 경우, 전환가입 전 누적된 희망 I 근로소득장려금의 5%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공제금 지급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환수 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못했을 경우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 중도 환수해지 사유 ·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 · 본인 사망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준비	● 없음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

** 압류 및 가압류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정보송신.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환수해지 요청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적립금이 있을 경우에만 본인적립금 저축에 따른 이자 지급하며, 이율 및 적용 내용은 희망 I·II, 내일키움통장과 동일

6 해지

1 해지절차

- ②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사유별 시스템 처리 절차] 확인하여 처리
- 신청자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활센터 판단 하에 6개월 연장(1회 한정) 또는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 중 택일 가능 (단, 6개월 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실행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6개월 내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 단, 만기도래 이후에 이행계획서 작성하고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선지급한 근로소득공제금은 만기성공금으로 지급 (단, 기존에 만기성공금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재가입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근로소득공제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조치 실시 필요
 -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2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

- ②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 희망키움통장 I 사업안내 참조
- 적립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 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㉔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하여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증빙서류는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등
- 증빙서류는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초 사용계획과 해지 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 용도에 해당하면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 탈수급 해지 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하고 벌칙 부과
 -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 가능

7 업무처리 절차

1 가입 및 계좌개설

- ㉔ (통장 가입 신청자)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생계수급 가구의 근로·사업활동 중인 청년이 신청
 - * 청년의 근무지 이탈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청년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통장 가입 신청자의 위임장 및 위임인과의 관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필요
- ㉔ (읍면동 주민센터)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신청자 자격조사
 -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기초 생활수급 제도상 동일 가구원 중 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자가 **통장 가입**하도록 권유 (채무불이행자도 **통장 가입**은 가능함)
 -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할 것

-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통장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 자격 요건: 신청인의 생계수급가구 여부, 청년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 ㉔ (시군구 통장 사업담당)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청년, 상시 근로자인 청년 등은 우선 가입(참고1 서식 참고, 필요시 고용임금확인서 확인 가능)**
 - 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입력·확정하면 금융기관에 대상자가 연계 등록 및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전송 후 은행 등록까지 1일 소요)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은행 등). 신청 후 15일 이내 안내
 - * [서식2] 참여결정(추천)통지서 활용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적립금액 없이 지원금이 생성되는 구조로,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 금융기관의 적금 운영방식에 따라 본인 적금계좌 개설과 지원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개설이 필요함을 신청인에게 안내(본인적금 계좌 저축액은 0원에서 50만원까지 설정 가능)
- ㉔ (가입자)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및 입출금 통장(가입자 명의) 개설
 -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 * 시군구 담당자 대리 접수 시 가입신청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 ㉔ (중앙자활센터) 지원금 계좌 개설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와 근로 소득장려금 적립계좌 개설요청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하나은행에서 자동 관리됨
 - ※ 적립계좌는 환수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중앙자활센터 명의(대상자명 부기)로 개설

㉔ (참고) 계좌의 종류

명의	구분	세부내용
가입자	본인적금계좌	- 가입자가 본인 적금을 적립하는 계좌 - 임의출금 제한**되며, 지자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 해지확정, 중앙자활센터 해지허가 SMS 수신 후 해지·출금 가능 * 의무적으로 적립 필요하지 않지만 본인 희망 시 자율적으로 저축 가능 (최대 50만원, 적립횟수 제한 없음)
	본인 입출금계좌*	- 지급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받는 계좌
중앙 자활센터	근로소득공제액 적립계좌	- 매월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 발생여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이 적립되는 계좌 - 임의출금이 제한**되며, 본인적금 만기 이후 정비되는 근로소득공제금 정정지급 업무처리 등을 위해 60개월로 개설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 매월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는 계좌 - 임의출금이 제한**되며, 본인적금 만기 이후 정비되는 근로소득장려금 정정지급 업무처리 등을 위해 60개월로 개설
	예탁금 계좌	- 시군구별 예탁받은 근로소득장려금을 관리하는 계좌 - 근로소득장려금(가상)계좌가 환수해지 될 경우,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 계좌로 환수금이 입금됨
	지원금별 입출금계좌***	- 근로소득장려금(가상)계좌가 해지되어 지급·환수되기 전 적립금이 거쳐 가는 계좌

* 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이므로 가입자가 지급 전에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필요. 지급 전 해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체계좌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지급 소요시간 증가

** 적립기간 중 해당 계좌 임의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등록하며, 지자체의 해지승인 및 지역자활센터 해지확인 후 지급정지 등록 해제와 지급처리 가능(은행 영업점에서 지급정지를 임의 해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제한)

***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의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해지할 경우 근거계좌 사용 필요

2 지원금 생성 및 적립

㉔ (가입자) 매월 근로·사업 활동*

*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 발생

㉔ (중앙자활센터) 시군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일정에 대해 SMS를 발송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함

※ 매월 업무가능일 상황에 따라 생성 종료일, 적립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㉔ (시군구 통장 사업팀) 매월 21일부터 3일간 행복e음을 통해 지원금(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①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 저축액 10만원 생성

- 당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하한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미생성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되는 등 근로소득공제액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액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②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과 별개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장려금 정보는 중앙자활센터로 전송

㉔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 팀에서 처리(20쪽 '환수해지 시 정산처리 절차' 참고)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세부 기준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 2018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40%의 50%)

ex. 근로사업소득이 81만원인 청년의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810,000 - 334,421) \times 0.63 = 299,615\text{원} \rightarrow (\text{반올림시}) 300,000\text{원}$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을 위한 소득 기준

- 근로소득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 반영된 가입자의 소득을 활용*하며,

* 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하며,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 생성 당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으로 산출

* 소득기준(예시) : 근로+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장려율(63%)

- 가입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소득 10만원 증가하면 근로소득장려금 63천원 증가

• 근로소득장려금 한도액

- 매월 소득액에 따라 산정하며 최대 485,000원까지* 지급

* (3인가구 생계비 지급 기준액 - 334,421) × 63%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천원으로 적립

(예)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 생성 → (반올림시) 12,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 (최소금액) 1,000원

-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한 미만이거나 적립중지 기간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시 소득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 따름

• 적립기간 중 생계수급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은 미적립되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 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01

IV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② (중앙자활센터) 생성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약금 계좌에서 해당 지역 개인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에 입금 (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익월 20일 이내** 전월 말 기준으로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적립액, 총 적립액 등 정보 제공

② (하나은행) 가입자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매월 규칙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안내

· **개인(대상자) 본인적금통장에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내역 인자 등 적립현황 제공 등**

②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통장 사업팀은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3 적립중지

② (시군구 통장 사업팀)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의 적립중지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하여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4 해지

②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환수 금액 등록 등 해지승인하고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②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환수해지자 및 일부지급해지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㉔ (중앙자활센터)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 처리하며, 처리 완료 후 SMS (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지원금 지급 시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별 입출금 계좌를 거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 지원금 환수 시

- (근로소득공제금)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자의 경우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로 입금*

* 단 만기성공금 수령하는 일부 지급 해지자의 경우, 누적된 근로소득공제액은 가입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계좌로 입금

㉕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가입자가 은행 방문 시 본인적금 계좌 해지 가능하도록 처리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사유별 시스템 처리 절차

구 분	해지사유	시스템 처리절차
전액지급	1. 통장 만기 후 3월까지 탈수급 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탈수급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이면 행복e음 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을 확인하고, 가입자로부터 지급해지 관련 서류* 접수 * [서식4]해지신청서, [서식5]적립금지급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처리
	2. 통장 만기 전 탈수급 한 경우	○ (지역자활센터) 만기일 이전 자격정보 변동(수급자→탈수급 변경)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 ※ 시군구는 만기일 이전 탈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의사 확인 전에 지급해지승인 처리 하지 않도록 유의

구 분	해지사유	시스템 처리절차
		① 탈수급 후 만기까지 통장유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시군구가 해지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시군구에 공문으로 가입자의 통장유지의사 전달 ②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 부터 지급해지 관련 서류 접수·검토 후, 시군구에 공문으로 지급해지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 자격정보(탈수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해지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지급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 만기 전 탈수급 하여 유지하다가 소득상한 초과 전 가입자 요청으로 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여 사업 종료해야 하는 경우, 탈수급 후 본인 사망한 경우 "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에 따라 처리
	3. 이행계획서 제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완료한 경우	①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의 지급해지승인 확인하고, 가입자로부터 해지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접수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제출대상(증빙제출예정)'으로 선택하여 저장 ② (가입자) 이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지역자활센터로 제출 ③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부터 관련서류 접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제출대상(증빙제출완료)'로 변경하고 처리여부 'Y'로 선택하여 저장
일부지급	통장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만기일 이후 3월 경과하여도 탈수급 하지 못했을 경우 행복e음 상 일부지급해지 승인 처리 * 만기시점 지나면 3월 유예기간 내에서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해지 처리 가능, 단 만기성공금 수령한 재가입자의 경우, 환수해지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상 시군구의 일부지급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서식5]적립금지급요구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환수	1.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구 분	해지사유	시스템 처리절차
	소득 미달 2. 탈수급 전 본인사망	②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서식4]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3. 본인포기 4. 압류/가압류 5. 사용용도 미증빙	①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서식4] 해지신청서 접수받아 공문으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6. 이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 증빙서류 미제출	①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용도 증빙서류 최종 미제출하여 환수해지 대상자가 되었음을 안내 - 시군구와 중앙자활센터에 '이행계획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환수해지 변경처리 알림' 공문 발송 * 공문 내용: 가입상품, 가입기수/연도, 이름, 생년월일, 해지유형, 환수금액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제출대상(증빙미제출)'로 변경 선택하여 저장 * '제출대상(증빙미제출)'로 변경하면 지급요청금액이 환수요청 금액으로 변경되며,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시 지자체모계좌로 환수됨 ② (시군구) 장려금 계좌 해지결과 정보 확인 후 [해지 후 정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 후 정산 처리 - 해지사유는 '(환수)(공통)사용용도미증빙' 선택 - 해지지원금 정보에서 · 장려금의 최종지원금액과 환수금액은 '0원'* * 장려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행계획서 미제출로 변경 시 환수하였으므로 시스템상에서는 최종지원금액과 환수금액을 '0원'으로 입력 · 공제금의 최종지원금액은 '0원', 환수금액은 해당금액 입력 후 [저장 후 전송] 버튼 클릭

* 통장 가입시 개설한 본인적립금 계좌에 저축하였을 경우는 본인적립금과 이자 지급(은행 별도 처리)

8 사례관리

- ② 지역자활센터는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인 저축 및 꾸준한 근로를 유지하여 자립·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동안 사례관리 지원
 - * 필요시 시군구 협조
 - ※ 세부내용은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안내 「II. 통장 사례관리 안내」 참고

9 환수해지 시 정산절차

1. 근로소득공제금

-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 보조금 정산) 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당해연도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2. 근로소득장려금

- ② 중앙자활센터
 - ①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당해연도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②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③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④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반납예정 상세내역(당해연도 잔액, 연도별 과년도 원금, 발생이자로 구분)을 지자체에 보고
- ⑤ 지자체의 반납고지 공문 및 고지서 요청에 따라 반납처리

㉔ 시군구(통장사업 담당자)

－ 근로소득장려금(통장 사업담당자)

- ① 공문을 통해 반납 상세내역 확인
- ② 회계부서를 통해 고지서 발부, 중앙자활센터에 반납요청 공문발송
- ③ 중앙자활센터로부터 반납 받은 국고보조금을 정산보고 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동일하며,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25쪽 「희망키움통장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 안내」 참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1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의미하는 탈수급(3개월 연속 생계급여 자격중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연속 3개월 중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생계급여 자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생계급여가 지급정지되거나 지급제외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예시 >

구분	생계급여 수급자격 중지 여부					지급요건 충족여부
	3월	4월	5월	6월	7월	
가입자 A	급여 지급	급여 지급	급여 정지 (수급 자격 중지)	급여 정지 (수급 자격 중지)	급여 정지 (수급 자격 중지)	수급자격 자체가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에만 지급해지 요건 충족 (해지신청 8월 1일부터 가능)
가입자 B	급여 지급	급여 정지 (지급 제외)	급여 지급	급여 지급	급여 정지 (지급 제외)	수급자격은 책정된 상태에서 급여만 정지된 상태(급여 미지급)이면 지급해지 요건 미충족(만기까지 유지가능)

2



지역자활센터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내일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청년이 취·창업등의 사유로 지급해지한 후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책정되어 희망키움통장II를 환수해지 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상기 예시 이외의 경우에도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합니다.

3



청년통장 가입자 가구에 3월달 생계급여가 과지급되어 4월달에는 과지급 분을 차감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지급분 차감으로 인해 4월에는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이나, 원래대로라면 생계급여가 나가야하는 대상이므로 근로소득공제액 생성 및 적립은 4월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4월에 해당 가입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담당자가 통장사업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4월분 공제액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4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만기성공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기 탈수급하였으나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만기성공금인 근로소득공제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성공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 전 탈수급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지급한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은 환수하여야 합니다.

5



생계수급 받는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동시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한 청년만 가입가능합니다.

6



희망키움통장 I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 희망키움통장 I을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에도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통장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가능합니다.

7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인 군인, 공익근무요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군입대의 경우는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단, 12개월 이상 불입하고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일부지급 처리(근로소득공제금만 지급)합니다.

8



유지 중에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신청당시 만 34세로 가입하였다면 환수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9



사용용도 증빙서류 중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은 유지 중인 적금에 대해서만 인정가능한가요?



적금상품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현재 유지 중임이 확인 가능한 적금상품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의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시작시점부터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합니다.

+ + +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첨부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

[서식 1]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27
<참고4> 청년희망키움통장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 용)(안)	30
[서식 2]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31	
[서식 3]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중지(취소·해제) 신청서	32
[서식 4] 희망·내일키움통장 해지(철회) 신청서	33
[서식 5]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요구서	34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5
[서식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37
[서식 8] 자산형성지원금 지급 확인서	39
[서식 9]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이행계획서 (예시) ...	40
[서식 10]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가입 신청서	41

가입연도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희망 I·내일 20일 - 희망 II 70일 - 청년희망 15일
가입기수			
가입은행	☐ 하나은행		

구분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내일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시정잔입형 ☐ 시장잔입형(금융) ☐ 사회서비스형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 인턴·도우미형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비상연락	관계	성명		연락처					
	직업	근무지명			근무기간	~				
	근무형태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가 입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휴대전화	

적립 및 가구 정보	1. 월별 저축액 (약정금액)	원 ※ 저축기간은 최대 36개월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해당 없음			
	2. 신청동기	☐ 신문, 인터넷, 방송 등 매스컴홍보 ☐ 친구, 이웃 등 권유 ☐ 주민센터 안내 ☐ 기타()			
	3. 세대유형	☐ 1인가구 ☐ 부부 ☐ 부부+자녀 ☐ 한부모+자녀 ☐ 3세대가구(조부모+부모(부부)+자녀) ☐ 형제자매 ☐ 조부모+손자녀 ☐ 비혈연 ☐ 기타 _____			
	4. 가구특성	☐ 노인가구 ☐ 다문화가구 ☐ 새터민가구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가구 ☐ 기타 _____			
	5. 저축액 사용계획				
	- 저축목적	☐ 주택구입·임대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개인자산형성(ISA 일반적금)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가구원 돌봄비용 ☐ 결혼자금 ☐ 그 밖에 자립·자활 (자유롭게 기술)			
	- 향후 자립·자활 계획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미참여 / 참여(사업명 : , 기간 : , 수령액 :)
희망·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최초 / 재가입(사업명 : , 참여기수 : , 적립횟수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등급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 동의서

□ 동의

- 나는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적립금은 목적 달성 시에만 지급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공통

- 가입 첫 월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적금을 납입하고, 지원금 정보가 생성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저축액 납입 의무사항 아님
- 각 프로그램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이 지급됩니다.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은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프로그램별

○ 희망키움통장 I (생계·의료수급자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하한기준 이상 발생
- 중도해지사유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 지급요건	3년 이내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희망키움통장 II (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중도해지사유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사업참여중 수급자 책정시 등
- 지급요건	3년 간 통장 유지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상담(총6회) 이상 이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저축 동의서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전월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이상) * 내일키움수익금의 경우 참여사업단의 수익금에 따라 차등 생성
- 중도해지사유	가입 가능한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 6개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지급요건 (가.항 또는 나.항 또는 다.항) 미충족 등
- 지급요건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탈수급 포함)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총6회) 이상 이수 나. 학고 입·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제외) 시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총6회) 이상 이수 (금융복지지원사업 제외)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을 취득한 경우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총6회) 이상 이수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가구의 청년 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당월 근로·사업소득 소득하한 기준 이상 발생
- 중도해지사유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미달,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 지급요건	3년 이내 탈수급(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계약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 의 합 니 다.**

년 월 일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 (생년월일) (성명)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참고 1

< 청년희망키움통장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 용)(안) >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	--	--------	------	--------------	---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수급책임) 신청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15~34세인 자 ○ (근로상황)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서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적격처리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적격 □ 부적격
심사 기준	자립성공 가능성 (20점)	■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실현가능성 *저축목적은 주택구입·임대, 결혼, 본인·자녀의 고등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통장유지 가능성 (20점)	■ 활동능력 및 고용상태 : 건강, 현 고용상태의 지속성, 상시근로자 여부 등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가구특성 (20점)	■ 한부모가족 또는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등	구분 배점 충족 20 미충족 0
	가구여건 등 지원 필요성 (15점)	■ 자가, 전·월세 등 자산 상황 등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10점)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사업지침에 대한 동의 정도, 재무 등 교육 참여 의지 등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기타평점 (15점)	■ 평가자 의견	
합계		* 심사결과 총점 7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 동점일 경우 ①가구특성, ②통장유지가능성, ③자립성공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류

[서식 2] <개정 2018.1.1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구분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내일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Ⅱ(추가·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형(금융) ☐ 사회서비스형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 인턴·도우미형		
신청 자	성 명	가입기수	
	생년월일	휴대전화	
	근무지명		
신청내용	월별 저축액 원 ※ 저축기간은 최대36개월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해당없음		
구비서류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본인적립금 입금기한	첫 입금년월일까지 (이후 매월 입금일 20일까지)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해당없음		
귀하를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대상으로 결정(추천)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적립 예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 전화번호 :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신청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증지(취소·해제) 신청서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구 분 : ☐ 신청 ☐ 취소 ☐ 해제(철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중지요청기간 :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 적립분까지 (차)

■ 은행계좌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나는 _____사유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을 _____개월간
증지(취소·해제)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해지(철회) 신청서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해 지 종 류 :

- 희망키움통장Ⅰ : ☐ 지급해지(☐ 만기 후 탈수급 ☐ 특별중도해지)
☐ 일부지급해지(만기성공) ☐ 환수 해지
- 희망키움통장Ⅱ : ☐ 지급해지(☐ 만기 ☐ 중도) ☐ 환수 해지
- 내일키움통장 : ☐ 지급해지(☐ 취업 ☐ 창업 ☐ 탈수급 ☐ 대학 입/복학 ☐ 자격취득)
☐ 일부지급해지(☐ 근로능력없음 ☐ 연령초과) ☐ 환수해지
- 청년희망키움통장 : ☐ 지급해지(☐ 만기 후 탈수급 ☐ 특별중도해지)
☐ 일부지급해지(☐ 만기 ☐ 중도) ☐ 환수 해지

나는 _____사유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을 해지(철회)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 해지 유형에 관계없이 통장 해지할 경우 작성 필수

[서식 5]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요구서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지급액 총액 : 원 (본인적립금 : 원, 지원금 : 원)						
- 지원금 내역(원)						
구분	근로소득 장려금	민간 매칭금	내일근로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근로소득 공제액
희망Ⅰ						
희망Ⅱ						
내일						
청년						
■ 사용용도 증빙 금액* : 원						
내역**	설명	규모/수량/기간	금액(원)			
* 증빙금액 : 지원금의 50%이상						
** 증빙내역에 대한 붙임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교육훈련비·의료비 영수증, 창업에 필요한 영수증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01

 「정부24」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 관련 서식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상자	통장구분		가입기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참여자로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가입 권유 ▶ 상품 개발, 연구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근무지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안내 등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운영사업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한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사회보장정보원 , 하나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위탁기관 및 동 사업 연구조사 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운영사업에 필요한 업무 처리, 관리, 연구 개발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근무지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제공대상 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전화 및 우편, 메일로 공지합니다.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안내 등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대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만 14세 미만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월평균 근로일수 :	원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원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 8]

자산형성지원금 지급 확인서							
확인 요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 가입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관계	☐ 본인 ☐ 가족		가입기수	ex) 20**년*기		
	유형	☐ 희망 I ☐ 희망 II ☐ 내일 ☐ 청년희망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구분	근로소득 장려금	민간 매칭금	내일근로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근로소득 공제액
	희망 I						
	희망 II						
	내일						
	청년						
용도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용						
위와 같이 근로소득장려금 등이 적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1. 현재 지급해지 요건을 충족한 가구(탈수급 등)만 발급 가능 2. 6개월 연속 근로소득미달(희망키움통장 I, 청년희망키움통장), 6개월 연속 본인적립금 미납(희망키움통장 I·II)의 경우 해지사유 발생가구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적립중지기간 전·후 기간도 연속으로 봄							

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

[서식 9]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이행계획서 (예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가입기수	년 월 (기)	만기일자	년 월 일
※ 저축액 사용 용도 ✓ 주택구입·임대 ✓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사업 창업·운영자금 ✓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ex.의료비) 등 ※ 구체적 지출내용(서술식) ex) 자녀 김희망의 대학 입학금 및 1학년 1학기 등록금(사용처) 500만원(사용금액)을 '17. 2월 중 (사용예정일) 지출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위 용도로 지출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본인 또는 자녀의 훈련·기술비, 기타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출내용 등)는 근로소득장려금/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입금 후 <u>6개월 이내</u>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및 벌칙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가입 신청서

※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에 한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성명	:	
가입기수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희망키움통장 I 본인적립금계좌번호	:	
희망키움통장 I 본인적립금		원
누적적립금액		원
희망키움통장 I 미납회수		회
적립회수		회 * 적립증지 포함
※ 희망키움통장 I 의 본인적립금 적립회수와 미납회수를 합산한 회수를 희망키움통장 I 의 가입기간으로 간주		
1) 희망키움통장 I 의 본인적립금계좌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적립금계좌 신규 개설 전 해지		
2) 누적된 희망키움통장 I 근로소득장려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의료수급까지 모두 탈수급 한 경우)		
3) 청년키움통장의 가입기간은 희망키움통장 I 에서 가입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6개월임		
전환가입내용	:	해지 시 희망키움통장 I 지급요건*까지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의료수급까지 모두 탈수급 한 경우)

본인은 위와 같이 희망키움통장 I 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0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